

고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2985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5. 8. 22.

김석한 의원 등 5인

나. 회 부 일 자: 2025. 8. 29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: 2025. 9. 10.

산업경제위원회 상정 ·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설명자: 김원순 의원)

가. 제한이유

- 이 조례는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실화하여 효율적으로 개선 · 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별표. 수수료의 범위를 상위 법령과 같이 변경

다. 참고사항

1) 관계법령

-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
2)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3)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5-44호

- 예고기간: 2025. 8. 22.(금) ~ 8. 28.(목)[6일간]
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 없음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조호철)

○ 개정 목적

-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,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위임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를 법령 기준에 맞추어 조정하고, 현실성을 반영하여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임

○ 주요 내용

- 안 별표(제2조 관련)의 수수료 기준을 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” 동일하게 조정(수수료율 2% 상향)

○ 종합검토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 타 시·군(10곳) 조례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, 상위 법령과 일치성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과 현실성은 인정되나, 다만 수수료 인상으로 일부 재정부담 요인은 있음.
-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5. 9. 10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